

## 식민지 시대 한국 가족의 변화:

1920년대 이혼소송과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권희정\*

### 1. 서론: 가족 연구와 식민지 시대

한국의 가족연구에 있어서 식민지 시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게만큼 깊이 침잠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가족 연구의 시작을 보면, 먼저 서구에서 가족은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아 그 제도적·역사적 측면이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법학, 의학, 심리학 등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에는 통계학적 방법론이 도입되고 가족사회학으로 학제 안에 정착되었다. 한국에 있어서도 가족의 연구는 이와 거의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역사학과 법학에서 가족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먼저 사적 연구로는 삼국시대 이래 친족제도 변천의 역사적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 김두현(1948)의 『조선가족제도 연구』가 있고, 법제사적 연구로는 혼인, 이혼, 양자, 상속 등에 관한 법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다루는 정광현(1967)의 『한국

---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가족법 연구』와 박병호(1974)의 『한국법제사고』 등의 연구가 있다.

1970년 이후에는 역사학, 법학에 이어 인류학과 사회학 등에서 가족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가족의 역사적 변천’ 또는 ‘가족의 변화’라는 제목 하에 한국 가족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는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가족의 변화를 보는데 그치거나, 현대까지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조선시대까지를 전통사회로, 해방 이후를 근대사회로 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가족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재석(1983)은 『한국가족 제도사 연구』에서 신라와 고려의 가족, 그리고 조선시대의 친족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광규(1977)는 『한국 가족의 사적연구』에서 삼국시대의 친족체계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남제(1997)의 『한국가족 제도의 변화』에서는 가족의 전통적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 경향이 유지되면서도, 1980년대부터는 가족 내 구성원간의 관계(박부진 1981), 친족과 신분제에 대한 심리인류학적 접근(김주희 1989),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가족과 친족 분석(윤형숙 1990), 가족의 변화와 성역할 관계의 분석(문옥표 1992), 가족을 구성하는 이념에 대한 연구(김은희 1995) 등 가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들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질적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이 가족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큰 경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인문 사회학에서 가족 연구는 다른 거대 주제들 아래 가려진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는 차별화된 가족 역사 연구 방법이 하나의 뚜렷한 경향으로 형성되었다. 즉, 오랫동안 제도적 기능적 구조적 측면의 연구가 가족 연구사를 풍미하였지만, 점차 역사학에 있어서 가족 연구를 사회사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1960

년 필립 아리에스의『양상 레짐기의 어린이와 가족생활』이 간행된다. 아리에스는 제3부에서 “가족”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규명함과 동시에 “가족”을 사람과 사람의 결합의 모습인 역사적 변화라는 큰 틀 안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아리에스의 연구 이래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가족과 사회가 상호 접촉하는 지점, 가족 내 구성원의 감정 상태가 가족의 변화와 관계 맺는 방식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시각으로의 명백한 방향 선회를 보인다. 더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친족의 제도나 용어, 가족의 형태나 기능과 같은 측면의 연구는 자취를 감추고, 그 무게 중심은 젠더, 권력, 차이와 같은 주제로 뚜렷이 이동하고 있으며, 모순, 역설, 양면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sup>1)</sup>

최근 한국에서도 일상사 연구가 활발하며, 여성과 가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물의 축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인의 일상을 보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변동 속에서 파악하고, 한 시대의 구조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붕괴” 또는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가족의 위기적 징후를 겪고 있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족의 연구는 이제 숫자를 기초로 한 가족 유형 분류하기, 가족 성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기능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에 직면해있다. 본 연구는, 가족은 역사적 관점으로, 그리고 가족 안의 개인들의 경험과 갈등,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전체 구조와 관계 맺는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시대 가족 연구는 아직 충분히 탐구되지 않은 영역이고, 본 연구는 21세기 수많은 거대 주제들 사이에 다시 가족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을 시작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반의 인식 속에 식민지 시대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는 일본군의

1) 상세한 연구들에 관해서는 Peletz(1995: 345-346) 참조.

무단통치와 독립군의 저항이 점철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일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입된 근대 사상으로 “우리의 전통”이 말살되고, 지식인들은 깊이 고뇌하고 개인들은 무력한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를 살던 개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고뇌하고 있으며, 갈등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1920년대에 들면 오늘날과 같이 높은 이혼률로 인한 “가정 파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고, 당시 ‘가족의 지형’ 역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sup>2)</sup> 하지만, “가족”을 파괴한다는 수많은 이혼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난 사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모순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 맺기 방식에서 집약적으로 들어난 것이며,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는 시대의 가족 지형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역사적 차원의 사건이란 의미를 가진다.

일찌기 아르렛 파르쥬와 미셸 푸코는 『가족의 혼란 - 바스티유 문서에 나타나는 봉인장(封印狀)』(1982)에서 부부간 다툼이나 부자간 대립으로 가족의 일원을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봉인장 분석을 통하여 양상 레짐 말기 가족에 생긴 균열의 깊이를 보여준 바 있다(二宮宏之 1986: 34-35).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가족 붕괴”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가기 시작하던 1920년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시대 상황을 살피고, 출판된 잡지와 신문을 통해 보도된 이혼에 관한 “담론”을 살피는 한편, 실제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사건들에 관한 “보도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뒤, 당시 가족 균열 양상에 대한 담론과 실재가 차별화되는 지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식민지 시대 가족의 지형변화는 봉건적 가족질서와의 결별이라기보다는 전통과 근대가 서로 교차하는 복잡한 층위의 ‘근대가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음을 강조

2) 1920년대부터 각종 잡지에서는 이혼에 관한 대담 및 논평 등이 실리고 있으며, 동아일보에는 “이혼 격증”이란 말과 함께 “家庭破壞의 流行病”(1922년 6월 26일 3면 4행), “破壞되는 鄉村家庭, 안해(아내) 사고 팔기, 걸핏하면 함의 리혼”(1928년 3월 17일 5면 3행) 등과 같은 기사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사회면을 지속적으로 채우고 있다.

하고자 한다.

## 2. 새로운 사상의 도입, 가치의 충돌과 병렬

19세기와 20세기 초 변화하고 있던 국외의 움직임과 맞물려 급변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또한 개항과 함께 더욱 거세게 밀려들어오고 있던 새로운 사상들 속에서 기존의 오래됨과 익숙함, 그리고 낯설음과 새로움 사이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과 어떠한 가치관을 버려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을 취해야 하는 가는 한 인간의 개성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공식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소위 ‘근대적’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반상(班常)의 계급이 타파되고, 인신매매가 금지되고,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미 갑오개혁에서 제도로서 정착시킨 문제들은 19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토론되었으며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과 그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으로서의 결혼”은 조선사회를 “미개와 야만”의 상태로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문명과 개화”의 길로 가게 하느냐의 여부가 달린 중요한 지점으로 부각되며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다.<sup>3)</sup>

하지만 “가정의 문명화”를 위해 부부간 연애에 기초한 자유 결혼이 처음부터 맹렬히 주장된 것은 아니다. 세대 간의 갈등해결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박승철은 “우리의 家庭에 在한 新舊思想의 衝

3) 주시경은 1906년 9월 『가정잡지』4호 “론설: 일즉이 혼인하는 폐”에서, “조혼 가명이 합하면 그 나라도 조코 조지 못혼 가명이 합하면 그 나라도 조지 못하느니 이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가명에서 시작할 것이요 가명을 다스리는 도는 실로 혼인에서 시작할 것이라. 사람의 일은 다 혼인에서 근원 되어 여러 가지로 흘러가는 연고라”하고 조혼의 폐해로는 체력이 약화, 학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들며, “옛날 나라에서도 잘 다스리던 때는 이십세부터 식집 가고 삼십세 부터 장가 갔고 지금 원턴하를 돌아 보아도 문명헌 나라일수록 혼인하기를 헐기가 확실히 증장하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남녀간 다 공부를 너덕이 하고 또 혼인하면 살림할 것과 자녀 교양할 도리까지 미리 유선헌 후에야 비로서 혼인을 행하며…”(주시경 1906, 9: 4-5)라고 하고 있다.

突”(『학지광』 13호, 1917: 7)에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세월”에는 구자(舊者)가 신자(新者)의 사상을 따름으로서 가정의 충돌을 막고 가정을 우선 화평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新文明 新思潮를 비로소 輸入하든 甲午年을 標準삼아 思想이 크게 變하얏음을 알지니 이와 갖치 서로 反對되난 兩思想의 衝突은 … 넓히 社會에 차질 수 잇으며 좁게 家庭에서 차지리라 하노라. … 舊者는 消極的이요 新者는 積極的이다. 父兄은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하여 머리를 깎지 말고 先王의 遺風대로 망건을 쓰며 행진을 높직이 치고 꿇어앉아 冊床을 對하면 四書 三經을 익히고 三皇五帝와 夏殷周 三代의 찬란한 文物制度며 孔孟顏曾子思 等 列聖의 盛한 道德을 본받아 着實한 先輩가 되라하면, 우리는 이에 反對意見을 가지고 머리도 깎겨야 하겠고 洋服도 입어보아야 하겠으며, 와싱톤傳, 예수傳, 마흐메트傳이며, 쉐스피어傑作集과 판테 神曲을 읽고 읊으며 … 우리는 흔히 父兄을 … 時代에 뒤진 人物이라하며, 父兄은 우리를 不悅하야 同時俗에 물든 卓識 지각 안난 놈이라 함으로써 思想의 衝突이 스스기나니 이와갓치 思想이 다른디 | 옷치 意見이 一致되리요 家庭에 잇서 意見이 不一致되교야 和平을 놀이기 어렵다하리노라. … 故로 우리 父兄은 먼저 現代를 理解하고서함이라(박승철 1917: 39-40).

“支那의 專制가 世界의 共和的 思想에 무너졌듯, 家庭의 專制도 무너져 부쇠고 家庭이 共和되야 할 것”(박승철 1917: 41)이란 주장은,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제가 문화통치 정책으로 선화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입된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 사상에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구가족 제도에서의 해방과 함께 가정은 자유연애에 입각한 자유결혼에 의해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진다. 1920년 3월 일엽 김원주에 의해 『신여자』가 창간되며 ‘신세대 신여자 선언’에 의해 여성도 인간임을 선언하였으며, 또 같은 해 『개벽』에서는 가족 제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함을 설명하면서 부인의 인격을 무시한 가족제도는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창해저사 1920, 8: 23-28). 그리고 이어 1921년 자유연애,

자유결혼, 그리고 자유이혼을 주장한 스웨덴의 교육학자인 엘렌 케이의 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자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920년 대 초기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개혁대상의 전면에 떠오르면서 축첩과 일부다처제 폐지,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자주능력의 배양, 정조관념 남녀 공히 적용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그리고 다양한 지면을 통하여 주장된다.

일부다처제나 축첩은 여자에 대한 동정이 박약한 탓이요 남자의 권력남용이며 축첩이 있는 이상 여자의 지위는 높아질 수 없다. … 우리 동포가 2천만이라 할 때 아직 규방에 갇혀 있는 여자 1천만을 제외하면 1천만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1천만 여성을 4천년 장구한 옥중생활에서 해방키 위해서는 내외법 폐지, 재가허용, 정조관념 여성차별 적용 철폐, 딸 매매 금지, 창부제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립할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며, 여자의 능력을 허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이덕봉 1921. 11: 3-7, 현대어 표기 필자, 이하 동일).

1920년 중반에 들어서면 여성해방에 대한 일련의 사상들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직업을 가져야 함에 보다 무게가 실어지고 있다. 즉,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고 행복한 결혼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sup>4)</sup> 예를 들면 배성룡(1925. 4)은 “여자의 직업과 그 의의”(『신여성』 3권 4호)에서 많은 여자들이 직업방면으로 나가길 원하며, 직업은 성인이 되기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한 단계라고 하며, “녀자의 독립자 정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 그 얼마나 아름다운 활동이며 얼마나 떳떳한 생활인가!”하고 여성의 직업 가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각경(1926. 4) 역시 “여자의 해방과 경제자유”(『청년』 6권 6호)에서 “단발을 하고 화장을 하고 남녀

4) 1930년대에 이르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당시의 이혼의 증가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논지로 전개되어 간다. 예를 들면, 양탄실(1936. 3)의 “女人論壇: 離婚問題에 關한 一考察”(『비판』4, 2, pp. 56-59, 비판사)에 이와 같은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가 동등한 교육을 받고 함께 산보를 하는 것이 해방이요 자유가 아니라  
정당한 직업을 취하여 自營自活하도록 반드시 직업적 생활을 면려(勉勵)  
하여야 비로소 경제상 해방과 인격적 동등을 이루게 될 것임”을 주장하  
고 있다.

하지만 가정이 공화(共和)롭고, 여성은 인간으로서 해방되어야 하고,  
자유연애에 입각하여 자유결혼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 속의 여성에 대한  
담론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나 남성의 연애와 결혼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사적 영역 또는 대자적 자아로서의 맥락 안에서는, 다  
시금 남편이 주인인 가정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존재,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즉 남성의 능동적이고 사회적 특성에 대비되는 수동적이  
고 가정적 존재로 담론화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모든 가정 내 구습을  
타파하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하던 이덕봉은 같은 글에서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고 가정에는 두 주인이 없으니 가정의 주인은 남자에게 양보하  
자. 이는 남자는 경제력의 우수함이 있는 까닭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여자는 생산적 특징으로 가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같은 글: 6)하  
고 하며, 예로부터 수많은 위인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강조하  
고 있다. 또한 이성환(1925. 4)은 “시집이란 무엇인가? 결혼케 된 3대  
이유 - 선생께 드리는 대담한 고백”(『신여성』 3권 4호)에서 어느 여성이  
자신에게 보내 온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리 선생님! 이 편지가 선생님 손에 닿을 즈음에는 남의 아내가 되어 있겠지요.  
집안은 제가 가지고 갈 옷들로 그득하고 분주합니다. 시집가게 된 이유는 첫  
째, 제 나이 스무 살을 넘음에 따라 제 몸에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는 처녀된 저  
의 어린 창자를 괴롭게 함이 너무도 심하였습니다. 둘째, 그이가 굶히지 않는  
청년의 기백을 가진 성격이면서도 ... 그 열정 순정을 받지 않으리요. 셋째 시  
집가는 날부터 양식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 ... 만일 시집살이  
가 뜻밖의 불행으로 마친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뉘우침 없겠습니다.

이성환은 그녀의 편지를 공개하며 독자들에게, “조선 여자치고 시집



이 무엇인지, 아내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 하고 그런 길을 밟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 적어도 처녀를 알고, 남편을 알고, 세상을 아는 어떠한 달관의 상식이 보이므로, 남달리 과도기에 있는 조선의 여자는 허영과 향락적 기분을 버리고 참된 시집살이를 찾을 것”이라고 충고하며 그녀의 태도를 격찬하고 있다. 언뜻 보면 위의 편지의 내용의 여성은 조혼이 아니라는 점, 남편의 열정과 순정을 받아 연애에 입각하여 결혼한다는 점,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표현에서 스스로 결정한 결혼이란 점 등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근대적 여성의 결혼이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필자인 이성환의 해석적 맥락에서 여성은 다시금 시집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진정한 본분과 도리를 아는 여성으로 의미화되고 있다. 즉 공적 담론의 차원에서 여자의 독립과 자율은 강조되고 있었지만, 결혼과 가정이란 맥락에서는 여전히 이전 시대 이상화되던 가내적이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1920년 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공화로운 가정과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해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내”로서의 여성이 강조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이고 모순적 시선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오창규는 1929년 『삼천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싣고 있다.

나는 27세 된 남성이고 B상업학교 졸업했으며 은행 근무를 하다 실직하였는데, 건강약화로 인해 아내가 진고개 상점에 취직했다. 아내는 뛰어난 예뻐다. 월급은 25원으로 수입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한 두 달이 지나며 아내가 일하는 곳에는 백화점 주인도 있을 테고 남자직원도 있을 테고... 아내를 찾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아내의 손을 만지는 풍경들이 상상이 되었다. 나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상 고통이 무서우니 될 수 있거든 아내를 내보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김진송 1999: 237 재인용)

즉 당시 시대는 모든 인간은 봉건적 질서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연애에 기초한 결혼으로 공화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담론이 품미하고 있었고, 여성 역시 하나의 인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근대가 가져온 여성에 대한 새로운 언설들이 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으로 추상화된 여성이 개별화되어 남성과 연애를 하는 또는 결혼을 하는 대상으로서 위치 지워질 때는 다시 봉건적 회기성이 발견된다. 남성의 이러한 분열된 여성에 대한 욕망은 『신여성』 3권 4호 23쪽에 “안심하고 사귄 수 있는 여자”의 모습에서 명확히 나타난다.<sup>5)</sup>

1. 이야기는 잘 하고도 비밀은 잘 지키는 여자 2. 겉은 무거운 듯하고 속은 시원한 여자 3. 천진난만하고 理智가 풍부한 여자 4. 쉬 사귄 수 있어도 정조관념은 굳은 여자 5. 필요한 때 ‘아니오’라고 푹푹히 말하는 여자 6. 부드럽지만 굳은 신념이 있는 여자 7. 정당한 줄 알면 숨김없이 말해주는 여자 8. 고상하고도 속이 ?인 여자 9. 아는 것이 있고도 교만 안 피는 여자 10. 사양하면서도 이해 있는 여자 11. 몸은 깨끗이 갖고도 허영심이 없는 여자 12. 세상의 경험은 있고도 교활하지 않은 여자.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며 일견 구사상과 신사상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봉건적 질서는 서서히 새로운 시대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1920년대 가정과 여성이 경험한 근대란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혼재하고, 혼재하면서도 배제하며, 배제하면서도 맞물리는 가운데, 단순히 전통 가족의 붕괴와 근대 가족의 등장 또는 구여성의 몰락과 신여성의 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층위의 담론이 교차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

5) 이 글은 저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잡지의 편집진에 의해 또는 편집진 중의 한 명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 3. 이혼 소송과 이혼의 “격증”: 가치의 충돌과 표출의 지점

#### 1) 1920년대의 이혼 가부(可否)에 대한 찬반 논쟁의 시작과 전개

이혼 또는 이혼 소송은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모순적으로 혼재되어 있던 가치관의 충돌이 결혼하여 살고 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에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는 자유연애나 자유결혼만큼이나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논쟁거리였다. 1921년 『서광』 벽두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특집을 다루고 있다. “목하 우리 조선인의 결혼 및 이혼문제에 대하여”라는 특집의 서문에는, “現下 舊習思想과 新來風潮에 動搖된 우리 朝鮮 青年男女에게는 婚姻問題가 死活?頭에 迫하였다 하여도 可합니다. … 目下 自由戀愛의 思想은 自由結婚, 自由離婚, 甚至於 家庭制度 破壞, 結婚制度 廢止 問題에까지 外來思潮의 衝動을 受하고, 그 反面으로는 早婚 強制結婚 不合理的 無意味의 夫婦 等으로 인하여 新舊衝突인 難關에 入한 今日의 現狀이 오며 아를너 目下 離婚 蓄妾 破倫壞俗의 事實이 날로 層生疊出함을 目睹하는 바라”라고 하며, 약 13명의 인사들로부터 “어떠한 아내와 남자를 원하는가”, “지금의 조선남녀의 이혼문제에 대한 가부?”, “어떠한 경우에 이혼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이 특집은 당시 잡지 지면의 글들이 5장 내외로 짧았던 것에 비해 무려 20여 쪽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13명의 인사 중에는 나혜석, 그리고 그녀의 남편 김우영, 일엽 김원주, 김동인 등 현대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혼을 예찬하거나, 유보적 또는 절충적이거나 절대 불가 등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장용진(張庸震)은 피차 합당한 이유 없이 경솔하게 이혼을 주장함은 “人道상의 罪惡”(장용진 1921: 47)이라고 하며, 조혼의 폐해는 심하나 이미 결혼한 사람은 “自己의 一身을 犧牲으로 供하여 今後로 오는 青年子女에게나 理想의 家庭을 주도록 和樂을 주도록 幸福을

주도록 努力하는 것이 道理의 正當할 것이니, 무교육의 처일지라도 臨時 敎育이라도 補習시켜서 可及의 理想에 近한 配偶를 作하도록 努力할 수 밖에 없습니다”(앞의 글: 48)라고 하며 일단 성립된 혼인은 개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홍병선(洪秉璇) 역시, “부모가 처를 강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년을 동거해 놓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 부인을 버리려 함은 축첩보다 악한 죄”라고 하며 대죄를 범한 경우나 여자가 남자를 버리거나 배척하여 출가했을 때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이혼을 적극 예찬하는 입장에서는 애정을 기반으로 결혼을 하였으면 애정이 없으면 이혼하는 것은 마땅히 합리적인 일이고 이것 역시 가정을 개혁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면, 황석우(黃錫禹)는, “朝鮮의 社會改革의 第一步는 家庭의 改革이 優先이다. 朝鮮의 家庭은 사랑과 平和가 없다. 性交의 瞬間이 지나면 개나 원숭이 같이 一日에도 몇 번씩 다투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밖에 무엇이 있느냐. … 오늘날 朝鮮사람이 社會에 어떠한 愛着을 갖지 않음은 이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 없는 부부의 離婚은 곧 사랑 없는 社會의 終結을 가지고 올 것이니 나는 적어도 現下 朝鮮에 있어는 離婚의 猛烈한 主唱者가 되려한다”고 하며 “사랑 없는 부부 사이에 놓인 ‘아이’의 불행은 父母가 갈려진 뒤에 맛보는 苦痛의 몇 배가 되리라”(황석우 1921: 51)고 주장하며 애정 없는 부부의 이혼을 적극 예찬하고 있다. 유진희(俞鎭熙) 역시, “烈女不更二夫란 敎訓이 女子를 奴隸로 束縛하라는 男子專橫의 惡訓인 것을 알면 정조니 수절이니 하는 것은 여자에게는 일대의 치욕이다. 남자의 정조와 달리 여자의 정조가 유독 중요시되는 것은 여자가 사유물이었기 때문이다. … 무리하게 속박한 일부일처 제도에 무엇이 그리 미점이 있느냐”고 하며 “간통, 정사 등의 悲慘事件은 다 제도자체의 自壞作用이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간파한 이상 조금도 주저 없이 이혼을 단행할 이유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혼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혼 가부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1920년대를 관통하여 1930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920년 대 중반에 들면 “리혼과 결혼이란 문제는 신문잡지에서 하도 떠들어서 조금도 신기하지 않다”<sup>6)</sup> 라고 할 정도이며, 1930년대에 들면 이혼의 가부에 대한 찬반논의를 떠나 이혼에 관한 법적 규정과 권리나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신여성의 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기사도 발견될 정도이다.<sup>7)</sup>

## 2) 담론과 통계 그리고 실제, 그 사이를 살아간 여성과 남성들

1920년대는 구질서의 붕괴과정에서 자유연애가 확산되고 자유결혼과 자유이혼이 옹호되면서 유학을 갔다 오고 신문화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 기혼 남성과 신여성 사이의 연애로 구여성과의 갈등이 심화된 시대로 설명된다. 이러한 설명은 주로 당시 가족의 위기를 조혼의 폐해, 또는 너무도 시대를 앞서 살았던 신여성이 가족 안에 정착하지 못 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구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으로 규정한다. 이혼은 따라서 특수한 부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왔다. 하지만 1920년대의 이혼과 이혼소송을 둘러싼 보도와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이들은 반드시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구여성들의 비극만으로 끝나는 이혼도 아니었다.

우선 1920년대의 이혼과 이혼 소송에 관한 통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과연 당시의 이혼과 이혼소송의 숫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태영의 이혼 연구(1957)에서 식민지 시대의 재판이혼의 통계를 보면 이혼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

6) C.Y 生(1926. 5), “논평,” 『신여성』4권 5호, pp. 12-16, 개역사.

7) 양윤식(1931. 11), “최근의 결혼과 법률관계”(『삼천리』3, 11, pp. 104-105); 석금성 외(1931. 11), “이혼한 남자와 결혼할 경우 민적등록에 대한 신여성의 태도,” 『삼천리』3, 11, pp. 45-47, 삼천리사

소송과 이혼에 이르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이혼을 지칭하며 “유행성”, 또는 “자각 없는 유행병”이라고 치부하였지만, 1924년에 이르면 이혼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그리고 192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혼 격증”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이혼은 경성부 내에서만 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1925년 9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8개월간 경성 부내 혼인 건수 980여건, 이혼 건수 100여건이던 비율이 1929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혼인 건수 19만, 이혼 건수 8천으로 급증하고 있다.<sup>9)</sup> 더구나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부부의 대부분은 그 주소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미 이혼 전 별거 상태에 있음으로 동거개념의 부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신문지상에 종종 보도되고 있던 “무늬만 부부”가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혼 소송과 이혼 건수의 증가는 1920년대 변화하고 있던 민법과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일제는 1912년 ‘조선 민사령’을 공포하여 민사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여 만들었지만, 가족법 부분은 ‘조선 민사령’ 11조에서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관습법을 적용시켰다. 하지만, 1923년(大正 12년) 7월 1일부터 일본민법 규정이 한국에서 의용(依用)되기 시작하며, 부부 쌍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정함과 동시에 쌍방의 협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처로부터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혼의 증가를 보는 당대의 시각은 “신교육을 받은 남성과 구식 부인”의 갈등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구여성의 비극을 과장하여 보도하거나,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하는 구여성의 노력을 감

8) 1924년 3월 26일 2면 4행, “주목할 이혼증가, 세도덕을 구하는 새현상,” 동아일보; 1928년 8월 14일 1면 1행, “이혼 수 격증 신중히 고려할 문제(사설),” 동아일보.

9) 『조선총독부 조사월보』의 보다 정확한 통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이혼은 총 8,021건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수의 12.5%인 1,00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최혜실 2000: 176).

동적으로 전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기혼 남자의 이혼병으로 소박당이 300명이 여자교육협회에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올면 호소”(1922년 12월 21일 7면 7행), “신식 남편에 쫓긴 여자 밤낮없이 설음으로 갈 곳 찾아”(1925년, 9월 11일 2면 5행), 또는 “이혼한다는 말에 푼전 없이 서울로 와 눈물겹게 공부하고 있는 박금동”의 사례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 박금동의 사례는 그녀의 사진까지 실고 또 그 분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면을 차지함으로써 구여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계몽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뚜렷이 보인다.

시내 안국동 근화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박금동(17)씨는 경상남도 합천 출생으로 구식 가정에서 대문 밧도 모르고 곱게 자라 15살 되던 해에 부모의 명령으로 친족 강규형(19)이라 하는 동래 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혼인을 한 후 곧 남편은 안해 박금동 닮여 「공부를 하여 새지식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일생을 가치 살 수가 업스니 만일 리혼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공부를 하시오」 하고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색시의 마음에도 그 말이 울흔 것을 깨닫고 …(시집과 친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성부 관훈동 85번지에 방을 하나 어더 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며 근화학교 3학년에 다닌다고 합니다. … 근화 학원당 김미리사 선생은 그 학생은 학비가 넉넉지 못하여 여간 고생을 아니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품행도 매우 양전합니다. … 박금동 역시 나는 엇더한 고생을 하든지 참고 꾸준히 공부하여 성공을 한 후가 아니면 집에 도라가지 아니하겠습시다. 그동안 지낸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만었습니다만.

그러나 1920년대 실제 이혼관련 보도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동아일보 사회면에 약 130여 건이 집계되고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혼 소송과 이혼은 남편 쪽 실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축첩이나 중혼이라기보다는 주로 남편의 행실 불량으로 인한 아내 쪽의 소송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한 감금, 주벽과 아편중독, 행방불명 등이거나 이유 없는 학대, 의처증으로 인한 구타, 아내 부모에 대한 구타 등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80여건). 이에 비해 남편의 축첩과 중혼이 이혼소송이나 이혼 사유가 된 경우는 극히 적은 비율에 그치며(10여건), 아내 쪽 실책으로 인한 이

혼 소송 제기나 이혼 사례는 여성이 도망을 하였거나 포악하거나 시부모를 불경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10여건 이하에 불과하다. 단 여성의 부정으로 인한 소송은 192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역시 남편 쪽의 행실 불량이나 구타나 학대 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약 16건)이다.

이렇듯 남편 쪽의 행실 불량과 아내에 대한 학대 또는 행방불명 등이 1920년대 전체를 통해 이혼소송과 이혼에 있어서 주요 이유로 지속적이고 고르게 분포하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1924년부터 시작하여 즉,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 확실히 1920년대 초반과 다른 어떤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노인 부부의 이혼 소송 건수의 뚜렷한 증가,<sup>10)</sup> 이혼하기 위한 계약 꾸미기, 애정 없는 결혼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신체적 결합이나 취향의 문제 등도 소송의 원인으로 발견된다. 가령, 1920년대 초반까지 이혼은 남편에 의한 구타를 피해 도망가거나, 보다 적극적이면 결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정도였는데,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 남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이혼문서를 꾸미기 위해 도장을 위조하는 것 등은 점잖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 친구를 통해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게 한 사건도 있다.

평양의 유명한 부호 명관도(鄭觀道)씨의 ...(해독불가) ... 명근모(28)와 9년 전에 육교식(21)과 결혼하여 지나오는 바 명근모는 얼마 전에 평원군 한천면 감팔리 리매화이란 여자를 우연히 알게 되자, 그와 한번 갖지 살아보고저 하였으나, 자기 안해인 육교식을 리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항상 고심하던 중, 금년 6월경에 돌연히 자기의 친구 당정주와 자기 안해 육교식이 간통을 하였

10) 1921.8.18 3면 8행 “八十세에 離婚, 원인은 무엇인가.” 1925.8.6 2면 6행 “老妄한 老人의 狂態, 삼남 이녀를 낳코 사는 로인이 첩의 피임으로 본처를 쫓코져, 본처의 악행을 드러 이혼소송,” 1925.9.2 2면 9행 “七十老翁도 離婚,” 1926.1.1 2면 6행 “七十老婆가 離婚당하고 남편을 걸어 고소,” 1927.3.7 2면 8행 “七十夫婦 離婚, 칠십세 부부가 면사무소에 리혼신청,” 1927.9.7 2면 8행 “五十餘年 同居하던 老夫婦 離婚訴訟,” 1927.9.9 2면 8행 “老夫는 作妾 否認, 老婆는 事實을 立證,” 1927.10.22 5면 3행 “老夫婦 離婚訴訟,” 1928.8.26 5면 5행 “七十老夫婦 離婚.”



다는 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옥교식은 검사국에서 죄조를 밧든 중 또한 돌연히 그의 남편 명근모를 거러서 「명근모는 자기를 리혼할 구실을 만드려고 그의 친구 장정주를 지난 음력 5월 25일에 자기 집으로 불러 술을 만히 먹인 후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경성으로 갈 터이니 업는 동안에 나의 처 옥교식과 간통을 하여 주면 그 보수로 집 한 채와 좁쌀 한 섬을 주겠다」고 하여 서로 약속을 한 후에, 홀로 자는 옥교식의 방에 장정주가 침입케 하여 강간을 당하였든 즉 이러한 남편과 갖지 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리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자료까지 청구한 근래 희유한 재미있는 사건이라더라(평양) (1926.10.29 5면 1행).

이 사건은 일심에서 패소한 아내 측이 다시 이심공판을 청구하며 보도된 것이다. 아내 측에서도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서 무고한 남편이 자신의 식기에 독을 넣었다고 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다(1929년 3월 23일 5면 1행).

또한 19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아주 적은 수의 보도이지만, “애정 없음”이란 사유가 등장하고 있다. 1924년 3월 27일 2면 4행을 보면, “「人形의 家」를 나서자, 예술가 高漢承氏의 리혼 소장 내용”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다.

예술가의 이혼소송이 있다.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는 개성군 송도면 지명 246번지에 사는 고한승씨는 시내 광화문동 145번지에 사는 김기복 녀자를 거러 경성다방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대정 2년에 피고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이 경성과 일본으로 다니며 상당히 수양을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별로히 김지 못한 중 피고는 항상 원고를 보고 하는 말이 리해업는 결혼으로써 부부가 도야 사랑업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인형(人形)의 살림이나 다름이 업고 따라서 두 사람을 위하여 모다 불행이라고 리혼을 주장하든 바 작년 6월에는 돌연히 원고의 집을 떠나 자기 친가로 간 후에 도시 도라오지 아니함으로 필경은 리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더라.

한편 최대성(38)이란 남자는 아내 김씨(28)와 살기 싫다고 1924년 2월 아내에게 돈 300원을 주고 다른 남자를 얻어 살라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하여 아내인 김씨가 같은 해 9월 20일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다. 이 밖에도 신체결함이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와 아내의 흡연이 문제가 되어 이혼소송에 이른 경우도 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울리리 477번지에 사는 리소간난(李小干蘭)(29)이란 여자는 수년 전 결혼하여 살던 남편 송원준(24, 소송 당시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 100번지 거주)이가 키가 적어 줄곧 자신을 학대하였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다(1925.12.23 2면 8행). 또한 평강군 남면 지암리에 사는 김용호(21)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동군 평강면 나매리 이모(李某)의 집으로 장가를 들은 이래 3년간 동거하여 모든 중 그 아내 이씨가 항상 그 남편과 시부모의 눈을 속여 가며 켈련을 먹었다 하여 지난 25일(1926년 4월) 쌍방의 부모가 입회한 후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한다(1926.5.29 5면 9행).

이렇듯, 192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이혼 소송과 이혼한 사례의 이유는 다양화되고 시대의 담론과 일치하고 있는 듯한, 즉 “애정”이 없는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례도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편의 행방불명, 범죄로 인한 남편의 구금, 아내에 대한 구타 등에 비하면 수적으로 현저히 적으며, 또한 보도 자체에서도 “희유한 재미있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등 시대의 특징적 흐름을 분석해내기에는 예외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근소하고 예외적이지만 1930년대에는 이혼과 가족의 변화 연구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다시 심도 있는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다.

1920년대의 이혼과 이혼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가족의 변화를 요약하면, 시대의 담론은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을 부르짖고, “여성의 해방”에 대한 소리도 높았지만, 당시 이혼 소송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 지형의 변화는 시대의 담론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3년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아내측이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된 남편, 마약과 알콜 중독인 남편, 도벽과 구타 등으로

더 이상 가정과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의 차원으로 제기 된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였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대를 관통하는 담론인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풍조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 남성이 구여성을 버리는 일로 인한 “가정 붕괴”는 거의 미미하며, 오히려 구여성의 비극을 강조하는 것은 “구여성의 교육”을 목적으로 큰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며 만들어낸 당시 시대의 이미지일 수 있다. 더구나 “인간의 해방”과 동시에 “여성의 해방”을 외치던 근대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정 안의 여성”, “시집의 도리를 아는 여성”이란 담론이 가족과 여성을 관통하여 구성되고 있었다. 결국, 1920년대 높은 이혼률은 한국 가족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가족 지형의 변화는 당대의 지식인이나 매체가 만들어낸 담론에 의해 포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갈등을 겪으며 이미 별개의 상태에 들어가며 가정을 균열내고 있던 수많은 부부들의 수보다 늘 적은 수만을 집계하고 있는 이혼 통계의 땅을 벗어나, 봉건과 근대가 교차하는 일상의 삶의 차원에서 발견된다.

#### 4. 결론 : 근대와 봉건이 교차하는 장, 가족

본 연구를 통하여 식민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연애, 결혼, 이혼에 대한 담론의 작동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가족의 역사적 변형을 이혼 소송과 이혼 사례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1920년대에 출판된 잡지를 보면 당시는 여성의 해방, 가정의 개화 등등의 담론이 풍성하게 유포되었고 또한 자유연애에 입각한 자유결혼을 지지함과 동시에 자유이혼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이 주장되고 있었다. 마치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듯, 당시는 상당히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1923년 부부쌍방의 이혼 소송과 합의 이혼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이러한 자유로운 시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론과 재판이혼 통계의 분석을 벗어나, 1920년대 동아일보

사회면의 이혼 소송과 이혼에 관련된 보도를 집계한 결과, 전체 비율 중 가장 높았던 사유는 남편의 행동불량, 즉 범죄 연루, 알콜 또는 아편 중독, 아내에 대한 학대와 구타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1920년대의 민법의 변화와 함께 여성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주어지자 더 이상 범죄자 남편이나, 약물 중독 남편의 학대와 구타에서 살지 않으려는 여성의 인권신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도된 사례들 중 아내가 남편의 축첩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에 이른 경우는 극히 낮은 비율이었고, 축첩과 함께 본처에 대한 구타와 학대가 동시에 동반되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순수한 축첩만으로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편 부재로 인한 생계의 위협, 또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야기되었을 때 이혼으로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이혼은 여성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결과이지, 이것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시대의 담론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는 “구질서로부터의 인간 해방”과 “자유연애와 결혼” 등의 담론이 점철되던 시대였지만, 여성을 둘러싼 담론의 층위는 차별화 되면서 사랑과 결혼의 맥락 안에서의 여성은 수동성, 온순함, 희생하는 정신이 강조되며 여성의 “성”이 결혼 제도로 편입되고 고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의 여성이 새로운 근대의 “자유”라고 하는 담론의 물결 속에서도 생계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여전히 축첩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역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 중반부터는 여성의 삶과 이혼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전시대의 봉건성의 결들도 당시 풍성하게 생산되던 자유연애에 기초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란 근대의 담론에 의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즉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이 없는 ‘인형의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나가 돌아오지 않은 아내를 역시 사랑하지 않아 이혼을

신청한 사례, 예술만 아는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이혼을 제기한 사례, 애정 없는 결혼을 끝내고 다른 여인과 살기 위해 친구를 통해 아내를 강간시키는 이혼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는 70을 넘은 노부부의 삶에서도 발생하기에 이른다. 아주 적지만 아내의 흡연과 신장에 대한 불만족, 즉 여성에 대한 취향과 여성의 몸을 이유로 기존의 가정으로부터 나오려는 시도도 발견된다.

이렇듯 변하지 않은 것의 지속,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던 박인덕이나 나혜석 그리고 다수의 ‘신여성’들의 이혼으로 이어진다. 1920년대의 이혼과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가 1930년대에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지면상 다음 연구로 미루어둘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이르게 된 결론은, 이혼이란 남성과 여성이 일상적 차원에서 의견 대립이나 성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순과 변화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적 현상으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를 관통하여 지속되던 높은 이혼율은 당시 봉건적 질서에 기반 한 가족의 균열의 깊이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축첩이나 중혼을 관습적으로는 허용하고,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지만 아내의 수동성과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대의 동의가 혼재하고 있는 봉건성의 결들이 교차하는 “근대가족”으로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강정숙

1999 “일제 강점 하의 여성운동,”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권보드래

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김두헌

1948 『조선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은희

1995 “문화적 관념체로서의 가족: 한국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인류학』 27: 183~214,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김주희

1989 “친족과 신분제: 심리인류학적 접근,” 『생활문화연구』 3: 197-210,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김진송

1999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문옥표

1992 “농촌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일본 군마현 편포촌 두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4: 231~263,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박부진

1981 “한국 농촌 가족의 고부관계,” 『한국문화인류학』 13: 87~118,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서형실

1999 “일제시기 신여성의 자유연애론,”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역사문제소 엮음, 역사비평사.

신명직

2003 『모던 뿌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신영숙

1999 “일제 식민지하의 변화된 여성의 삶,”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한국근대여성연구』(한국여성연구총서 제2집),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여성신문사

2001 『20세기 여성사건사』, 길밖세상.

유해정

1999 “일제 식민지 하의 여성정책,”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윤형숙

1990 “Feminism에서 본 친족 연구,” 『한국문화인류학』22: 51~70,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이광규

1977 『한국 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이태영

1957 “한국 이혼제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69 “한국 이혼 연구: 법사회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정광현

1967 『한국 가족법 연구』, 서울대출판부.

최재석

1983 『한국가족 제도사 연구』, 일지사.

최혜실

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필립 아리에스

1960 『아동의 탄생』(문지영 역 2003), 새물결.

한남제

1997 “산업화와 가족해체의 증가,” 『한국가족 제도의 변화』, 일지사.

### 〈외국문헌〉

二宮宏之

1986 『家の歴史社會學』, 新評論.

Peletz, Michael G.

1995 "Kinship Studies in Late Twentieth-Century Anthrop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4, 343-372.

### 〈잡지 기사〉

#### 1910년대

주시경(1906. 9), '일즉이 혼인하는 폐', 《가정잡지사》 4, pp. 1-5, 가정  
잡지사.

나혜석(1914. 12), '이상적 부인', 《학지광》 3, pp. 13-14, 학지광사.

박승철(1917. 7), 《학지광》 13, pp. 39-43, 학지광사.

#### 1920년대

임천정(1920. 4), '俗戀愛는 반대', 《서울》 3, pp. 57-59, 한성도서주식  
회사.

창해거사(1920. 8), "가족 제도의 측면," 『개벽』, pp. 23-28, 개벽사.

장응진 외(1921. 1), '목하 우리 조선인의 결혼 및 이혼문제에 대하여',  
《서광》 8, pp. 43-62, 문흥사.

이덕봉(1921. 11), '여자의 역사적 관찰과 그 장래', 《청년》 1, 8, 통권  
79, pp. 2-7, 청년잡지사.

이대위(1922. 1), '여자의 경제적 독립', 《청년》 2, 1, 통권 81, pp.  
6-10, 청년잡지사.

신홍우 91922. 7), '가정과 연애', 《청년》 2, 7, 통권 87, pp. 6-10, 청  
년잡지사.

D.G.L.生(1923. 5), '결혼과 이혼문제를 엇더케 해결할 것인가', 《청  
년》 3,5, 통권 96, pp. 25-30, 청년잡지사.

李晨煥(1925. 4), '시집이란 무엇인가: 결혼케 된 3대요인 -선생께 드리  
는 대답한 고백', 《신여성》 3, 4, pp. 24-26, 개벽사.

임진실(1926. 3), '여자의 지위에 대한 일고찰', 《청년》 6, 3, 통권 129,  
pp. 46-48, 청년잡지사.

배성룡(1925. 4), '여자의 직업과 그 의의', 《신여성》 3, 4, pp. 18-23.

유각경(1926. 4), '여자해방과 경제자유', 《청년》 6, 4, 통권 130호, pp.  
5-7, 청년잡지사.

C.Y.生(1926. 5), '논평: 리혼과 결혼', 《신여성》 4, 5, pp. 12-16, 개벽사.



- 김지환(1928. 4), '가정과 부부', 《청년》, pp. 25-30, 청년잡지사.
- 박인덕(1928. 4), '조선여자와 직업문제', 《우라키》 3, pp. 46-49, 우라키사.
- 이만규(1929. 5), '여자의 사명', 《培花》 1, pp. 2-19, 배화여자 고등보통학교 교우회.

<key concepts>: Colonial period, history of everyday life, tradition, modern, marriage, divorce, romantic love, free love

## The Change of Korean Family in th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Divorce Cases

Kwon, Hee-jung\*

Studies of family in Korean society have initiated from historical science and jurisprudence around 1950s. Since the 1970s, many academic researchers carried out by anthropologists and sociologists have been accumulated.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structure or functions of the Korean family even though the researches aimed at investigating historical change or transformation of Korean family. There has been quite strong tendency to divide Korean family into two: one is the traditional extended family, the other modern nuclear family. New themes have emerged and new approaches have been applied to family studies since 1980s. These studies analyzed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ideologies of family coherence, or sex roles between couples using new methodologies or theories such as psycho-anthropology or feminism. Although these studies were enriched by qualitative research, it was unable to form a mainstream in academism overwhelmed by other subjects and themes.

---

\* Ph.D. Candidat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oday, issues on family start to reappear in the academic field under the circumstance of growing interest relating to individuals and their everyday life.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 researches which grasp the everyday life of individual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understand it within the dynamics of political and historical changes have not been seen yet. In this sense, studies of family in the colonial period are still unexplored.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circumstances of the colonial period, especially focusing on 1920s, in which “family breakdown” issues were in the center of intellectuals' concerns are reviewed. Secondly, discourses on divorce in magazines and newspapers are also investigated. Third, divorce cases in the colonial period are analyzed in order to reveal the gap between discourses and reality.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increasing divorce rates in the colonial period should not be construed that modernization of Korean family or expansion of women's rights, which resulted from the influence of the modern discourses such as free marriage, free divorce, or women's emancipation. Rather, it is socio-cultural point that shows the complicated transforming process of Korean family. In the public discourse, woman is expected to be free and independent as a human being, and all family members should be equal, but in the private discourse woman is positioned as a wife and mother who always privatize family's interests and sacrifice her own desires. Moreover, it is agreed that there should be a distinctive sex role: men as breadwinners and women as housewives. When divorce cases are analyzed, it becomes clearer that the high divorce rate has nothing to do with the modern discourses. Most of divorce suits, which are filed by women, are not because they are empowered but are desperate to seek to survive daily life due to their husbands who are violent, imprisoned, or alcoholic. In conclusion, the Korean family in the colonial period

demonstrates the dynamic changes resulting in high divorce rates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collapses of traditional family: the values and structure of family seem to start to take shape of modernity but the fabrics of colonial family were weaved by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threads.